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제2021-12호

공 고 문

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(주민등록증의 발급) 규정에 의거,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들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다음 대상자들은 통지불능인 상태로,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연번	성명	주소	발급기한
1	이**	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50번길 42, 503호	2021.02.01.~2022.01.31.
2	윤**	수원시 장안구 팔달로309번길 3-8, 101호	2021.02.01.~2022.01.31.

2021.02.25.

장안구 영화동장

소관부서	수원시 장안구 영화동	담당자 직.성명	행정8급 오슬아	전화번호	031) 228-5439